

임시출입(체류) 신청서

주 소			출입장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출입기간	~		-	010 - -	
차량번호			장비 차량번호		
○ 동행 출입인원 / 출입 초소(통일대교, 전진대교) / 목적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차량정보
1. 민북지역 출입시 교부된 출입증은 항시 휴대하여야하며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가. 상시 출입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불법 사용 시 영구적 발급을 금지 나. 출입증 미소지, 통제초소 검문 불응, 출입시간 임의지연, 지정통행로 미준수, 목적 외 인원 동행 출입 및 방조 등 위반의 경우 출입증 회수 및 발급 금지 다. 동행인(방문객, 영농보조인 등)에 의한 출입 위규 및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동책임 부담 2. 민북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할부대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통제보호구역 또는 울타리가 설치되었거나 출입통제 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 나.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주택의 신축 다.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동·식·수산물의 포획 또는 채취 라.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측량과 이에 관한 문서나 도화 등의 발간·복제 마. 보호구역 등의 표지나 군사시설(부대시설, 장벽시설, 진지 등)의 이전 또는 훼손 바. 표류물, 침몰물의 습득 또는 군사작전이나 항해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유해물의 유기 사.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각종 총포의 발사, 폭발물의 사용 행위 아. 군 통제에 불응하거나 군사보안에 저촉되는 각종 행위 자. 기타 군 작전에 방해가 되거나 불법(도굴 등) 행위 차. 민북지역내 영농활동간 불법 전기철책을 설치하는 행위 3.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련법에 의해 고발 조치한다. 상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출입을 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성 명 :		인(서명)	
(회사, 단체의 대표)					
1570부대 정보참모처 ☎ 031-940-6206, 6225 E-mail abcdef@mnd.go.kr					

임시출입(체류) 신청서(예시)

주 소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심궁로 43번길 64, 한마음 아파트 901동, 212호		출입장소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120
성 명	홍길동	주민번호	연 락 처	
출입기간	'25. 5. 10. ~ '25. 5. 11.	001122 - 3344556		010-1234-5678
차량번호	123가 4567	차 종	쏘렌토(검정)	

○동행 출입인원 / 출입 초소(통일대교, 전진대교) / 목적 : 00공사 설계 목적 현장확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차량정보
백두산	001111-3456789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등원로 123번길 43, 평화빌라 101동 202호	010-8765-4321	321나 4321 아반떼(흰색)

1. 민북지역 출입시 교부된 출입증은 항시 휴대하여야하며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 가. 상시 출입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불법 사용 시 영구적 발급을 금지
나. 출입증 미소지, 통제초소 검문 불응, 출입시간 임의지연, 지정통행로 미준수, 목적 외 인원 동행 출입 및 방조 등 위반의 경우 출입증 회수 및 발급 금지
다. 동행인(방문객, 영농보조인 등)에 의한 출입 위규 및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동책임 부담

2. 민북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할부대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가. 통제보호구역 또는 울타리가 설치되었거나 출입통제 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
- 나.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주택의 신축
- 다.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동·식·수산물의 포획 또는 채취
- 라.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측량과 이에 관한 문서나 도화 등의 발간·복제
- 마. 보호구역 등의 표지나 군사시설(부대시설, 장벽시설, 진지 등)의 이전 또는 훼손
- 바. 표류물, 침몰물의 습득 또는 군사작전이나 항해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유해물의 유기
- 사.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각종 총포의 발사, 폭발물의 사용 행위
- 아. 군 통제에 불응하거나 군사보안에 저촉되는 각종 행위
- 자. 기타 군 작전에 방해가 되거나 불법(도굴 등) 행위
- 차. 민북지역내 영농활동간 불법 전기철책을 설치하는 행위

3.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련법에 의해 고발 조치한다.

상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출입을 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성 명 : 인(서명)
 (회사, 단체의 대표)

1570부대 정보참모처 ☎ 031-940-6206, 6225 E-mail abcdef@mnd.go.kr